

찾기 쉬운

생활법령정보 Q&A

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

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(http://easylaw.go.kr)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,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』에서는 **2025년 12월 현재 서술형 279건,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**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
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『**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** 웹페이지 **http://easylaw.go.kr.** 모바일앱 **Smart 생활법률**』에 접속하셔서 '백문백답'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KOR 법 제 처 www.moleg.go.kr

저출생 지원

Q **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.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**

A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휴가 기간에는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제1항, 제11조제2항제1호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, 『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』, 128~129면).
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(난임진단서는 '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'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)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

■ 참고로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(보건복지부, 『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』, 129면).

- 지원범위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- 지원시술횟수: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- 지원최대금액: 체외수정(1~20회,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00만원,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), 인공수정(1~5회, 최대 30만원)

※ 매년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2026년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의 『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』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난임치료휴가

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1항 본문).

■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(「고용보험법」 제76조제1항제3호).

■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(「고용보험법」 제75조).

1.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2.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
Q 출산을 하면 "첫만남이용권"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,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?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은 받을 수 없나요?

A "첫만남이용권"은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행복카드(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)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또한, 첫만남이용권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(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 등)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

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하면,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에 지급됩니다(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3항·제5항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).

-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: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
-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: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

■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(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5항 본문).

■ 첫만남이용권은 지급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(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6항).

출산축하금(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 등) 지급

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(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 등)을 지급하고 있습니다(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10조).

■ 출산축하금(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 등)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, 첫만남이용권과는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출산축하금(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 등)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, 지원 내용, 신청방법, 신청기간 등이 다르므로,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KOR 법 제 처 www.mobg.go.kr

Q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요.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,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A 근로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, 자녀의 질병, 사고 또는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휴직·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·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1항 본문).

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3항).

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4항).

육아휴직

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함)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본문).

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4조의3).

-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

KOR 법 제 처
www.moleg.go.kr

가족돌봄휴직

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, 사고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1항 본문).

■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,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4항제1호).

가족돌봄휴가

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, 사고 또는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2항 본문).

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[감염병 확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) 이내]이며,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).

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).

※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, 가족돌봄휴직 ·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, 19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2제6항 참조).

Q 아이를 해외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. 이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A 네,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액공제 대상 교육비

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·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(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 제3항제1호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6제4항).

-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
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
-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
-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
-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

■ 다만,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·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)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(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6제5항).

- 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

공제금액

-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(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3항제1호).
  -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: 1명당 연 300만원
  - 대학생인 경우: 1명당 연 900만원

※ 그 밖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KOR 법 제 처
www.moleg.go.kr

Q 둘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.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,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?

A 네,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"출산 크레딧"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.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.

"국민연금 출산 크레딧"이란?

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
추가 산입기간

■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(「국민연금법」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)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(「국민연금법」 제19조제1항).

- 자녀가 2명인 경우: 12개월

KOR 법 제 처
www.moleg.go.kr

•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

자녀의 인정 범위

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(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)으로 합니다[「국민연금법」 부칙(법률 제8541호, 2007. 7. 23.) 제19조 및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].

• 「민법」에 따른 친생자, 인지된 출생자, 양자 및 친양자

•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양된 자녀

부모의 합의 절차

■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,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(「국민연금법」 제19조제2항).

■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,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(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).

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

■ 자녀의 부 또는 모(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)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(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).

•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

• 파양(罷養)된 경우

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(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5조제3항).

키워드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기자전거, 개인형이동장치, 공유킥보드, 공유자전거, 전동킥보드면허, 운전면허, 원동기장치자전거, 전동킥보드주차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, 승차정원, 음주측정, 인도주행, 전동외륜보드, 전동이륜보드, 전동스케이트보드, 구호의무, 신고의무, 사고후미조치, 뺑소니, 도주